

옥외광고업 ([]신규 []변경 []휴업 []폐업 []재개업) 등록 신청서(신고서)

※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✓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공통기재부분

등록번호		
신청인(신고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업소명	전화번호
	주소	

영업장 소재지(사무실 또는 작업장)

종업원 수	명	기술능력(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)
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영업 내용

변경 등록 기재부분

변경내용	변경 구분 []대표자 []업소(법인)명 []주소 []영업장 소재지 []기술능력 []기타	
	변경 연월일	
	변경내용	변경 전 변경 후

휴업·폐업·재개업 기재부분

휴업·폐업 연월일	휴업·폐업 사유
-----------	----------

휴업기간

재개업 연월일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,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(신고인) 제출서류	1. 신규등록 신청 가.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) 나.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변경등록 신청: 옥외광고업 등록증 3. 휴업·폐업 신고: 옥외광고업 등록증 4. 재개업 신고: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(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)	수수료 ※ 시·군·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: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(신고인)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